

EU 탄소국경조정세 논의동향과 추진전망



Global
Market
Report

CONTENTS

목 차

I. 논의 배경 / 1

II. 추진 동향 / 2

III. 추진전망 및 영향/ 7

요 약

□ EU 탄소국경조정세(CBAM) 논의 배경

- EU 집행위는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예고('19.12.11)
 - *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 이전
-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 미준수 역외국 제품을 타겟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산업의 비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추진
- 유럽 의회도 코로나 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 차입금 상환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세 등을 포함한 EU 차원의 신규세제 도입 승인('20.9.16)
 - *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세 부과시, 연간 약 50억~140억 유로 세수확보 기대

□ 추진 동향

- EU 집행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공공협의('20.3~10월) 등을 통해 세부 지침을 마련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음.
 - 다만, 최종 의결권을 가진 유럽의회가 탄소국경조정세 관련 자체 작성 보고서*를 채택('21.3.10)함으로써, 대략적인 추진방향 유추 가능
 - * 유럽의회 산하 '환경·공공보건·식량안전에 관한 위원회(ENVI)가 마련한 '탄소국경조정세의 WTO 합치성 도모' 연구 보고서
- (보고서 주요내용) ①EU ETS(배출권거래제도)와 병행 추진 ②소비세 혹은 ETS 변동세를 형태로 세금 부과, ③전력·에너지 집약분야 內 무상 할당 배출권 유지, ④수입업자 입증시 탄소국경조정세 감축 조정 주장

※ (참고) '탄소국경조정세의 WTO 합치성 도모' 연구 보고서 주요 내용

- EU ETS 제도와 병행(EU ETS 가격을 반영해서 탄소국경조정세 설계)
- ①역내외산에 소비세 (역내 탄소세 부과가 선결과제, 탄소배출량 추적·계산에 애로 우려) 혹은 ②역외산에 EU ETS가격이 반영된 변동세를 형태로 부과 추진
- 모든 상품 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며, 기존 ETS에서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던 전력과 에너지 집약산업(전체 EU탄소배출량의 94% 차지)에 대한 무상할당 유지
-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이 기준량보다 더 적다는 것을 입증하여 탄소국경조정세 부담 감축 가능
-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세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원체제 마련

□ 향후 추진전망

- EU 집행위는 '21년 2분기 중 관련 지침(Directive)* 제안 후, 유럽 의회 의결을 거쳐 '23년부터 시행계획
 - * EU 회원국들에게 목표를 정해주고, 국가별로 법률을 제정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강제
 -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적은 분야에 먼저 적용하고, 석유화학·철강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유럽 의회 채택 보고서에서 주장한 '전력·에너지 집약 분야 내 배출권 무상 할당 유지는 탄소국경조정세 근본 취지상 장기적으로 폐지 가능
- 역외 교역국들이 EU 탄소국경조정세가 WTO 협정 및 EU 규범과 불합치* 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방어논리 개발에 주력할 전망
 - * 국제기후규범 미준수 역외국 제품을 차별하고, EU 역내 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GATT 1조(최혜국 대우), 3조(내국민 대우), 20조(건강목적 등 일반적 예외) 요건 위배
 - ①WTO 규범 및 관련 판례를 통해 합치성 근거를 확보하고, ②환경상품 협정 협상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

※ (참고) 탄소국경조정세 핵심 골격인 '탄소가격 책정 방법' 수립이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 향후 EU 집행위 도입 형태에 교역국의 관심 집중

- ①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 부재 및 ②정확한 탄소량 측정이 어렵다는 난관 극복 필요
 - ① EU ETS를 포함해, 쏠 세계적으로 61개 탄소가격 책정체제가 운용 중 (WB, '20.5월 기준)
 - ② 수입품의 글로벌 공급망 단계별로 발생한 직간접 탄소배출량과 가격납부 여부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프랑스 국제경제연구소 CEPII)

□ 업계 영향

- (산업별)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배출이 집중된 산업에 영향이 불가피하나, 국가별·업체별 대응능력*에 따라 파급정도가 달라질 전망
 - * ETS 운영 여부, 친환경제품 생산, 친환경공정 도입 등
 - EU 규제에 선제적 대비가 되어 있을 경우 경쟁우위 확보 가능
- (GVC 재편) 기업들이 중국, 인도 공장을 제 3국으로 이전하거나 EU 역내로 리쇼어링을 추진하면서 GVC가 재편될 가능성

I. 논의 배경

□ EU 집행위, 기후변화대응책이자 경제성장전략 ‘유럽 그린딜 발표 (‘19.12월)

- ‘19년 12월 출범한 新EU 집행위의 6대 핵심정책* 중 최우선 과제로 2050년 탄소 중립(탄소배출량 제로화) 목표 설정

* ① 기후변화대응, ② 디지털화, ③ 공정무역 환경조성, ④ 유럽형 사회 시장경제 구축, ⑤ 유럽통합 확대, ⑥ 민주주의

- 유럽 그린딜은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①탄소배출 감축, ②에너지의 탈탄소화, ③新산업 전략, ④지속가능한 운송, ⑤건축분야 에너지 및 자원효율성 강화, ⑥식품 안전 및 생물다양성보호 정책 제시

- 이 중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존 EU가 설정했던 2030년 40%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55%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EU ETS 적용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조정세*(이하 탄소국경세) 도입 명시

*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라고도 불리며,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존재하는 지역에 물품이 수입될 때에 수출국의 탄소비용을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탄소국경세) 기후변화 대응보다 역내 산업보호를 위한 통상규제 성격 뚜렷

-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해,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 미준수 역외국 제품을 타겟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 이전

- EU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①생산시설을 규제가 취약한 지역으로 이전 혹은 ②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등으로 생산 원가가 상승해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

- EU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면서 기업들의 대응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역외산 탄소규제 여건 조성

- 유럽 의회도 코로나 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 차입금 상환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세 등을 포함한 EU 차원의 신규세제 도입 승인(‘20.9.16)

*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세 부과시, 연간 약 50억~140억 유로 세수확보 기대

II. 추진 동향

- ◇ EU가 추진하는 탄소국경세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음.
- ◇ 다만, 최종 의결권을 가진 유럽의회가 탄소국경세 관련 자체작성 보고서*를 채택(21.3.10)함으로써, 대략적인 추진방향 유추 가능
 - * 유럽의회 산하 '환경·공공보건·식량안전에 관한 위원회(ENVI)가 마련한 '탄소국경조정세의 WTO 합치성 도모' 연구 보고서

□ (EU 집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접수 및 공공협의 완료

- 탄소국경조정세의 적용대상 분야, 가격 책정방법, 탄소함량의 평가 기준, EU의 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방안 등에 대해 역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추진
 -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 접수(2020.3.4.~4.1)
 - *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초기 영향평가 보고서(Inception Impact Assessment)' 발간 (2020.3.4)

※ 초기 영향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서 CBAM 도입을 위해 2021년도에 입법 제안을 할 계획이며,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전세계적인 탄소 감축을 도모할 예정
- WTO 및 여타 EU의 통상협정들과의 합치성을 고려하고, ETS와 같은 탄소 가격 책정 정책과의 조화를 검토하고자 함.
- EU 역내외 경제적 효과 및 사회적 영향,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야 하며,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조치 영향 평가를 위한 거시경제적 분석 등을 위해 EU 역내 에너지 시장과 ETS 관련 데이터를 검토하고, 현재 캘리포니아와 퀘벡에서의 ETS 관련 데이터 및 효과적인 탄소 세율 관련 OECD 데이터 또한 검토 예정
- 회원국들 및 기업 연합 (특히 에너지, 교통 등 민감부문), NGO, 시민사회, 노동자조합, 학계와 공공 협의 필요

-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접수 및 공공협의 진행 (2020.7.22~10.28)

※ EU 집행위 공공협의 결과 요약발표(21.1.6)

- (응답자) 615개 EU 역내외 시민, 협단체 참여
- (전반적 평가) 탄소누출 이슈를 대응할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 우세
- (탄소국경세 적용 분야)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분야*로 현행 EU ETS 에 포함된 제품에 집중하고, 밸류체인 쏠단계를 포괄해야한다는 의견의 주종
 - * 5개 분야 : ①전기 생산, 배전, 공급 ②시멘트, 라임, 석회 제조 ③철강 및 합금철 제조 ④기본 화학제품, 비료, 니트로젠 화합물, 플라스틱, 합성고무 제조, ⑤원유 추출
- (적용 방법) ① 탄소누출 위험이 큰 섹터 내 역외산에 대한 세금 부과(1.3), ② EU ETS 가격 반영 역외산 전용 ETS 운영(1.05), ③탄소누출 위험이 큰 특수 제품에 대해 역내 외산에 모두 탄소세 부과(1.10), ④EU ETS를 역외산에도 확대 적용(0.98)
 - * 0 : 적절하지 않음, 1 : 다소 적절, 2 : 매우 적절
- (이행 이슈) 수입제품 내 탄소량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들 내 컨센서스가 없었음.
 - 직간접 배출량을 모두 고려,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모든 배출량 고려, 수입자는 수입 제품 생산방식을 검증가능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
 - 아울러, 제 3자에 의한 수입제품 탄소량 검증, 자율증명 불허, EU 수출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검토 등의 의견도 다수 개진

□ (유럽 의회) 자체 작성한 관련 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위에 입장 전달

- 유럽의회 산하 ‘환경, 공공보건, 식량안전에 관한 위원회 (Parliament’s Committee on the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ENVI)’는 ‘탄소국경세의 WTO 합치성 도모’ 보고서* 발표 (20.10.7)
 - * 원제 : Towards a WTO-compatibl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ENVI에서 동 보고서 채택(21.2.5) 후, 유럽 의회에서 전체 표결에서 가결 (21.3.10) → 유럽의회 보고서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관련 정책을 준비 중인 EU 집행위에 의회 입장 전달 가능
- (보고서 내용) ①EU ETS(배출권거래제도)와 병행 추진 ②소비세 혹은 ETS 변동세를 형태로 세금 부과, ③전력·에너지 집약분야 內 무상 할당배출권 유지, ④수입업자 입증시 탄소국경세 감축 조정 주장

※ (참고) 유럽의회 탄소국경세(CBAM) 보고서 요약

· 탄소국경세의 대상과 목적

- UNFCCC와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상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서의 탄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들의 수입품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을 도모함
- 따라서 EU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들은 EU 상품에 대해서 탄소국경세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함

· WTO에 합치되는 탄소국경세 설계

- 탄소국경세가 보호주의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또는 제한의 수단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비차별적인 운영을 약속 (para. 7)
- 최빈국 및 도서국가들에 대한 특별대우가 필요하며 (para. 8), TFEU¹⁾ 제349조²⁾에 따라 외곽지역에 대한 특별한 고려 수반
- 다른 온실가스 감축 조치들과 에너지 효율성 확보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조치들이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하며 (para. 10), EU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국경세를 보완하여 더 엄격한 상품 관련 기준을 제안하도록 요청 (para. 11)
- 탄소국경세는 ETS 배출권을 무상으로 계속 할당 받는 전력부문 및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석유정제, 종이, 유리, 화학 및 비료 산업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을 포함하여 ETS가 적용되는 모든 상품군의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어야 함 (para. 12)³⁾
- 특히 수입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간접적인 배출을 모두 포함하여 투명하고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함 (para. 13)
- 탄소국경세는 조세형식부터 ETS를 활용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도입될 수 있으며, ETS의 개정과 함께 설계되어야 하고 EU 산업의 이중 보호를 방지하여야 함 (para. 14)
- EU 역내생산자들에 의해 지불되고 있는 탄소비용에 상응하여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부과되어야 하며, 이 때 EU의 ETS에서 정해지는 가격을 반영하며 ETS 또한 탄소국경세와 병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para. 16)
- 탄소국경세는 모든 역내외산 최종상품에 대한 소비세와 같이 단순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설정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추적하여 계산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ETS에서 결정되는 유동성 있는 탄소 가격을 반영하는 변동(evolution) 세금 부과 경우 TFEU 제192(2)조⁴⁾에 근거하여 재정적 성격의(fiscal nature) 세금으로서 도입될 수도 있음 (para. 17)
- 수입업자들은 ETS를 위한 EU 기준보다도 자신들의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이 더 적다는 것을 입증하여 탄소국경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이러한 선택권이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됨(para. 18)
- ETS와는 달리 탄소국경세는 연료로서 사용되는 목재의 연소를 탄소중립적이라고 간주하면 안 되며, 목재와 흙에 대해서도 가격이 책정되어야 함 (para. 20)
-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탄소국경세를 우회하기 위한 수출 (예: 선로 변경 발송, 반가공품 수출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촉구

• 탄소국경세의 무역 관련 측면

- FTA와 같이 EU의 국제무역규범을 고려할 때, 탄소국경세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챕터를 위한 행위로서 설계되어야 하며 (para. 23), UN 지속가능개발목표와 WTO 개혁 논의에서 탄소국경세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함(paras. 24-26)
- GATT 제I조(MFN)와 제III조(NT), 그리고 필요시 제XX조(일반적 예외)에 근거하여 탄소국경세를 설계하고 (para. 27), 특히 NT에서 강조하는 '국산품과 수입품의 동등한 대우'를 고려하여 ETS와 동등한 비용을 수입품에 부과하도록 함

• 탄소국경세의 운영 자원

- 탄소국경세는 현재 관세 체제의 연장 또는 ETS에 보완적인 구조로 시행될 수 있으며 (para. 32), 탄소국경세를 통해 생성되는 재정수입은 EU 예산에 귀속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글로벌 탄소 감축을 위한 지원 등으로 사용되도록 함(para. 33)

• 탄소국경세의 이행 및 기타 사항

- 탄소국경세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보조금 철폐와 동반되어야 함 (para. 39)
- 탄소국경세는 집행위원회의 지원 하에 독립된 기관이 감독하여야 하며, 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에게 최소 연간 2회의 정보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para. 40)
- 집행위원회는 좀 더 명확하고 적극적인 탄소국경세 이행 추진 계획을 설계하고 늦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0%를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para. 42)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고려하고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야 함(paras. 45-46)

1) EU 기능에 관한 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2) Article 349: "Taking account of the structural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Guadeloupe, French Guiana, Martinique, Réunion, Saint-Barthélemy, Saint-Martin, the Azores, Madeira and the Canary Islands, which is compounded by their remoteness, insularity, small size, difficult topography and climate, economic dependence on a few products, the permanence and combination of which severely restrain their development, the Council, on a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and after consulting the European Parliament, shall adopt specific measures aimed, in particular, at laying down the conditions of application of the Treaties to those regions, including common policies. ..."

3) 12. ...the CBAM should cover the power sector and energy-intensive industrial sectors like cement, steel, aluminium, oil refinery, paper, glass, chemicals and fertilisers, which continue to receive substantial free allocations, and still represent 94 % of EU industrial emissions;

4) TITLE XX ENVIRONMENT (Article 191에서는 환경 관련 조치 결정시 과학 및 기술 데이터와 환경 조건 등의 평가를 수반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고, Article 192(1)은 이에 따라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입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Article 192(2)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특별한 의사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명시함)

Article 192: "2. By way of derogation from the decision-making procedure provided for in paragraph 1 and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114, the Council acting unanimously in accordance with a special legislative procedure and after consulting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shall adopt:

(a) provisions primarily of a fiscal nature;

(b) measures affecting:

- town and country planning,

- quantitativ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or affecting, directly or indirectly, the availability of those resources,

- land use, with the exception of waste management;

(c) measures significantly affecting a Member State's choice between different energy sources and the general structure of its energy supply. ...

< EU 탄소국경세 주요 추진경과 >

시기	추진 주체	추진내용
'19.12.11	EU 집행위원회	· 유럽 그린딜 탄소국경세 도입 발표
'20.3.4	EU 집행위원회	· 초기영향평가보고서 발간
'20.3.4~4.1	EU 집행위원회	·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 접수
'20.7.22~10.28	EU 집행위원회	·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공협의 진행
'20.9.16	EU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장, 2021년도 계획으로 탄소국경세 입법제안 발표
'20.10.7	유럽의회	· ENVI, 탄소국경세 보고서 초안 발표
'20.10.19	EU 집행위원회	· EU 집행위원회 2021년도 작업계획 발표 (2분기 입법 예정)
'21.2.5	유럽의회	· ENVI, 탄소국경세 보고서 채택
'21.3.10	유럽의회	· 의회 표결에 따라 탄소국경세 보고서 (일부개정) 최종 채택
'21.6월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이사회	· 탄소국경세 지침(Directive) 제정 및 결의 예정

III. 추진 전망 및 영향

□ EU 집행위는 '21년 2분기 중 관련 지침(Directive)* 제안 후, 유럽의회 의결을 거쳐 '23년부터 시행계획

* EU 회원국들에게 목표를 정해주고, 국가별로 법률을 제정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강제

○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적은 분야에 먼저 적용하고, 석유화학·철강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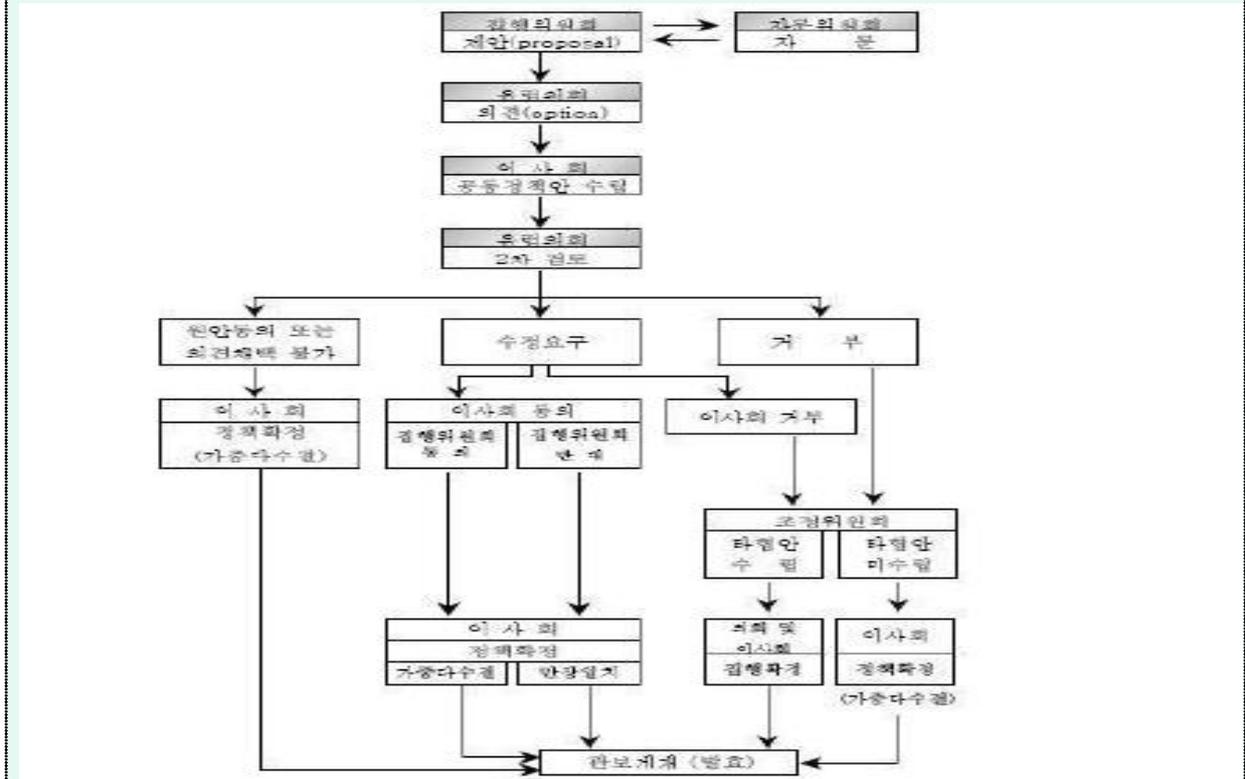
* Financial Times ('20.1.29)

○ 유럽 의회 채택 보고서에서 주장한 '전력·에너지 집약 분야 내 배출권 무상 할당 유지는 탄소국경조정세 근본 취지상 장기적으로 폐지 가능성

- EU 업계가 탄소국경세와 더불어 배출권 무상할당까지 유지한다면, 국내 생산자의 '이중보호'를 금지하는 WTO 규정에 따라 중대한 문제가 될 우려

※ (참고) EU 입법절차

· 입법안 제출 후에 1독회, 이사회가 유럽의회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독회, 의회 다수결을 통해 이사회 의견 거부 및 개정안을 제시하는 경우 조정 단계를 거쳐 3독회 돌입 → 3독회에도 의회와 이사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최종 폐기



□ 역외 교역국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방어논리 개발에 주력 전망

○ (문제 제기내용) EU 탄소국경세가 WTO 협정 및 EU 규범과 불합치

- 국제기후규범 미준수 역외국 제품을 차별하고, EU 역내 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GATT 1조(최혜국 대우), 3조(내국민 대우)에 위배되며, 20조(건강·생명보호 목적 등 일반적 예외) 정당화 요건 불충족

* (중국·인도·러시아) EU 탄소국경세가 환경을 구실로 한 신규 무역장벽으로 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도입 중단 촉구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EU 탄소국경세 법안 도입을 관망하는 입장

○ (대응방안) ①WTO 규범 및 관련 판례를 통해 합치성 근거를 확보하고, ②환경상품협정 협상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여건 조성에 노력 예상

- 프랑스는 WTO 사무총장에게 EU 탄소국경세에 관한 자국의 제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WTO 실무그룹을 발족한다고 발표 (21.4.1)

*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와 참여를 원하는 기타 유럽국가, WTO로 구성되는 실무그룹은 탄소국경세가 WTO규정을 준수하고, 개도국에 불리한 제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발족한다고 밝힘.

※ (참고) 탄소국경조정세 핵심 골격인 '탄소가격 책정 방법' 수립이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 향후 EU 집행위 도입 형태에 교역국의 관심 집중

- ①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 부재 및 ②정확한 탄소량 측정이 어렵다는 난관 극복 필요

① EU ETS를 포함해, 쉘 세계적으로 61개 탄소가격 책정체제가 운용 중 (WB, '20.5월 기준)

② 수입품의 글로벌 공급망 단계별로 발생한 직간접 탄소배출량과 가격납부 여부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프랑스 국제경제연구소 CEPII)

□ (업계영향) 시멘트·석유화학·철강 등 탄소배출이 집중된 산업 중심으로 직간접적 영향 불가피

○ 다만 탄소국경세에 대한 국가별·기업별 대응능력에 따라 영향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관측

- 수입업체 입증시 탄소국경세 감축이 가능할 경우, 탄소중립 정책 시행(EIS 제도 운영, 친환경 공정 도입 등) 여부에 따라 과급력이 달라질 전망

※ 현지 진출기업 인터뷰 결과 종합

- (철강) 제도 도입으로 인해, EU 역외수입은 상당 폭 감소 전망으로, 한국이 유럽 수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향후 적용 예외국으로 인정받기를 희망
- 아울러, 기업 차원에서는 EU 공장 내 친환경공정 도입을 통해 선제대응 추진
- (자동차부품)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며,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해외진출·M&A를 통해 EU 역내 생산 확대 필요

- (GVC 재편) 기업들이 중국, 인도 공장을 제 3국으로 이전하거나 EU 역내로 리쇼어링을 추진하면서 GVC가 재편될 가능성
 - 탄소배출량 기준 초과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경쟁력 악화로 연계되면서, 소위 '탄소장벽'에 대응하는 GVC 재편 가속화 예상

작 성 자

- 통상지원팀 이 정 선
- 브뤼셀 무역관 권 지 연

Global Market Report 21-010

EU 탄소국경조정세 논의동향과 추진전망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1년 4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통상지원팀 (02-3460-7509)
I S B N		979-11-6490-905-6(95320)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